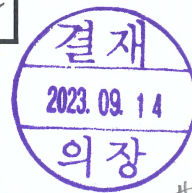


현장속으로  
시민결의로

# 의원 발의 의안 접수 및 회부

의 장
기 12 중반기 9/14



#399



2023. 9.

서울특별시의회  
의 사 담 당 관

# 의원 발의 의안 접수 및 회부

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(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)에 따라 의안이 접수되었기에 관련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함.

회부의안 : 1건 (결의안 1)

연 번 (의안번호)	의 안 명	주 요 내 용	발의·제출	발의·
			(소관 상임위원회)	제출일
1 (1266)	서울특별시의회 인권·권익향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	<p>□ 「지방자치법」 제64조 및 「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」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시 여성, 청소년, 장애인, 노숙인, 체육인, 교사, 학생 등 다양한 계층의 인권과 권익증진을 위해 관련 규정과 제도를 정비하고, 장기 전략 수립과 실행 계획 논의를 위한 ‘서울특별시의회 인권·권익향상 특별위원회’를 구성함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위원수는 15인 이내로 하고, 그 활동기간은 선임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, 필요시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.</li> <li>- 특별위원회에 조례의 제정·개정·폐지 권한을 포함한 조례안 심사권을 부여한다.</li> <li>-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한다.</li> </ul>	서호연 의원 외 12명 (운영)	2023. 9.14.

향후계획

-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(상임위원회 회부)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의안 회부

붙임 : 관련 의안 1부. 끝.